언론조정중재규칙

제정 1981. 4. 1. 규칙 제 81- 2호
개정 1981. 7. 1. 규칙 제 81-12호
1981. 8.24. 규칙 제 81-18호
1986.12. 1. 규칙 제 86- 7호
1988. 8.29. 규칙 제 88- 4호
1995.10.12. 규칙 제 95- 2호
1996. 7. 1. 규칙 제 96- 7호
1999. 7.13. 규칙 제 99- 5호
2003. 3.18. 규칙 제2003- 1호
2004. 2.20. 규칙 제2004- 8호
전부개정 2005. 7.22. 규칙 제2005-12호
2005.12.20. 규칙 제2005-21호
2008. 6.27. 규칙 제2008- 8호
2009. 2. 9. 규칙 제2009- 2호
2009. 4. 6. 규칙 제2009- 3호
2009. 6.29. 규칙 제2009- 6호
2009. 8.31. 규칙 제2009-10호
2010. 5.25. 규칙 제2010- 6호
2010. 9. 6. 규칙 제2010-13호
2010.12. 7. 규칙 제2010-20호
2011. 2.23. 규칙 제2011- 3호
2011. 7.11. 규칙 제2011-10호
2011.11.29. 규칙 제2011-16호
2012. 2.20. 규칙 제2012- 4호
2012. 8.27. 규칙 제2012-10호
2012. 9.19. 규칙 제2012-11호
2012.11.26. 규칙 제2012-14호
2015. 2.24. 규칙 제2015- 6호
2015. 8.31. 규칙 제2015-14호
2018. 6.28. 규칙 제2018-12호
2019. 2.25. 규칙 제2019- 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제5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다루는 조정 및 중재(이하 "조정등"이라 한다)의 세부 절차, 중재부의 관할,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정·중재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2.25.>

제2조(적용범위) 조정 및 중재의 절차 등에 관하여 법, 영,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기본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1.7.11., 2019.2.25.>

제3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, 2019.2.25.>

1. "중재부"란 5명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조정 및 중재를 하는 합의체를 말한다.
2. "조사관"이란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무처 직원을 말한다.
3. "조사관 업무시스템"이란 위원회가 조정등 절차에서 사건기록 등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·처리·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.
4. "전자문서"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.
5. "전자신청시스템"이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조정신청서 등 각종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.

[제목개정 2019.2.25.]

제4조(중재부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) 중재부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중재부) ① 법 제9조에 따른 중재부의 장(이하 "중재부장"이라 한다)이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으로 하여금 중재부장을 대신하도록 지명한다. 다만, 위원장은 미리 중재부장을 대신할 중재위원을 지명해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위원장은 특정 중재부의 조정등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중재부의 중재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재부의 조정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, 운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1.2.23.>

제6조(조정등의 관할권) ① 조정등의 관할권은 그 대상이 된 언론사·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(이하 '언론사등'이라 한다)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. <개정 2009.6.29.>

② 언론사등의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대한 조정등의 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. <개정 2009.6.29.>

③ 위원장은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조정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.

④ 사건의 관할·이송·병합 및 분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이 없으면 「민사소송법」 및 같은 법 규칙을 준용한다. <신설 2009.6.29., 개정 2011.7.11.>

제7조(기피권의 제한) ① 당사자가 해당 중재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중재위원들 앞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은 조사관에게도 준용한다. <개정 2011.7.11.>

제2장 조정

제8조(서면에 의한 조정신청) ①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사무처 또는 관할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제1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1.7.11.>

제8조의2(전자우편에 의한 조정신청) ① 위원회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되 이 경우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접수담당 부서는 제1항의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하되, 이때 신청인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③ 접수담당 부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28.>

④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신청서 접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중재부의 중재부장이 이를 검토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12.7.]

제9조(구술에 의한 조정신청) ① 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“구술 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구술로 조정신청을 접수할 경우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다음 사항을 적는다. <개정 2010.9.6., 2011.7.11.>

1. 신청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
2.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, 대표자명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
3. 조정대상표현물의 내용, 보도일 및 신청인의 인지일
4. 조정신청의 취지 : 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의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의 경우의 손해배상액
5. 조정신청의 이유
6. 조정신청조서 작성일

③ 구술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제10조(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신청 등)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 구축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, 2019.2.25.>

② 전자문서로 조정신청한 사람은 중재부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, 2019.2.25.>

③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2.9., 2010.12.7.>

[제목개정 2010.12.7.]

제11조(접수 등) ① 접수담당 부서는 조정신청을 서면이나 구술로 접수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접수담당 부서는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조정신청을 접수할 경우 접수 사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05.12.20., 2010.12.7., 2011.7.11.>

③ 접수담당 부서는 인터넷신문,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, 해당 기사 제목 바로 밑에 ‘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’이라는 문구를 기사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해당 기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편집 범위를 벗어난 경로로 제공될 때에는 해당 기사를 선택하면 별도의 화면을 통해 상기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다. <신설 2009.6.29., 개정 2009.8.31., 2011.7.11.>

④ 제6조에 따른 관할권이 없는 중재부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중재부는 지

체 없이 관할 중재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6.29., 2011.7.11.>

⑤ 중재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9.6.29.>

제11조의2(조정신청간주) ① 조정등 신청을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시와 방법을 지체 없이 담당 중재부에 알려야 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가 피신청인 지위를 부여받는 시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때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9.6.29.]

제12조(조정기일 지정 등)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사관은 최초의 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중재부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조정신청서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지에 세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한다. 이 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>

② 조사관은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사무처에 출석하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수증을 받고 직접 송달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④ 해당 조정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⑤ 중재부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⑥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중재부는 2차 출석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 및 방송 등을 요하는 정정보도문등의 내용과 게재 및 방송 등의 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정하여 2차 조정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 조정기일 출석요구서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⑨ 조정기일에는 관할 중재부의 중재위원,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조사관이 참석한다.

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우, 중재부장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7.>

제12조의2(간이한 방식을 이용한 송달방법) ① 심리기일이 임박하여 기일의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관은 전화·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한 경우 조사관은 당사자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[본조신설 2009.2.9.]

제13조(미성년자의 조정행위)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.

제14조(조정대리인) ① 중재부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정의 대리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조정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

제15조(참석·방청 등) ① 중재부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조정사건 관계자의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, 2012.2.20.>

② 중재부장은 법조인(사법연수원생,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예비법조인을 포함한다), 대학교수 등 실무연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참석이나 방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<신설 2012.2.20.>

③ 조정에 참석하거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9.6., 개정 2011.7.11., 2012.2.20.>

④ 누구든지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 심리실에서 녹음·녹화·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 <개정 2012.2.20.>

[제목개정 2010.9.6.]

제16조(진술) ①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. <개정 2011.11.29.>

② 중재부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발언을 금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③ 구술로 진술하는 경우 조사관은 그 내용을 조정심리조서에 적는다. <개정 2011.7.11.>

제17조(증거조사) ① 법 제20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중재부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증거조사는 서증조사, 검증, 감정, 사실조회, 문서송부촉탁,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.

③ 제2항의 증거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11.11.29.>

제18조(조정신청의 취하) ① 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정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관은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. 다만,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9.6.29.>

제19조(조정신청의 각하 등) ①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거나, 조정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, 제11조제5항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(却下)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>

②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·반론보도청구·추후보도청구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20., 2011.7.11.>

제20조(조정심리조서) 조사관은 조정기일마다 조정심리조서를 작성하고, 조사관과 중재부장이 기명날인한다.

제21조(조정의 성립 등) ① 조정의 결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즉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양쪽과 조사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전자적으로 변환한 후 심리조서와 함께 조사관 업무시스템 상의 해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, 2019.2.25.>

② 제1항의 경우 중재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27.>

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④ 조사관은 조정조서에 다음 사항을 적고 관여 중재부장과 조사관이 기명날인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1.7.11.>

1. 당사자와 대리인
2. 조정대상
3. 조정신청 취지
4. 조정신청사항
5. 조정사항
6. 조정연월일
7. 중재부명

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사항을 적을 때에는 조정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여 적을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⑥ 조정조서에 중재부장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던 중재위원 중 1명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1.7.11.>

제22조(결정서) ①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서, 기각결정서, 조정불성립결정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는 관여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하여 조사관 업무시스템 상의 해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0.5.25., 2010.12.7., 2011.7.11., 2019.2.25.>

② 법 제10조에 따른 중재위원의 제척·기피 결정서는 관여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조사관 업무시스템 상의 해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. <개정 2010.5.25., 2010.12.7., 2011.7.11., 2019.2.25.>

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은 그 뜻을 적고 조사관이 기명날인한 후 중재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. <신설 2010.12.7., 개정 2011.7.11.>

[제목개정 2010.5.25.]

제23조(조정조서의 송달) ① 조사관은 조정조서의 정본(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합의성립통지서를 포함한다)을 조정성립일 또는 합의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증명으로, 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1.7.11.>

② 조정조서 정본은 그 뜻을 기재하고 조사관이 기명날인한 후 중재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. <개정 2008.6.27.>

[제목개정 2008.6.27.]

제24조(조정조서 등본 등 송부) 중재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정조서 등본의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을 송부한다. <개정 2008.6.27.>

[제목개정 2008.6.27.]

제25조(결정서의 송달) 조사관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정본, 조정불성립결정서의 정본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증명으로 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조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0.5.25., 2011.7.11.>

[제목개정 2010.5.25.]

제26조(이의신청의 방법 등)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중재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담임 조사관은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1.>

③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언론사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원고인 피해자는 제1심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이를 서면(書面)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언론사등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<개정 2009.6.29., 2011.7.11.>

제27조(이의신청에 따른 사건기록의 송부 등)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중재부는 해당 사건기록 일체의 등본을 관할 법원으로 신속히 송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기록 송부 시 참고인 심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, 2011.11.29.>

② 조정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(訴)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이후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다. <개정 2011.7.11.>

제28조(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등본의 송부) 중재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등본의 송부촉탁을 받을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등본을 송부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0.5.25., 2011.7.11.>

[제목개정 2008.6.27., 2010.5.25.]

제29조(경정) 조정조서의 경정에 관하여는「민사소송법」제211조제1항, 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6.27., 2011.7.11.>

제30조(추후보도청구)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2(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) ①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문, 반론보도문, 추후보도문(이하 '정정보도문 등'이라 한다)에는 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보도문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다.

② 정정보도문등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
③ 정정보도문등의 본문은 2단락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며, 첫 번째 단락에는 조정대상기사 중 문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적고, 두 번째 단락에는 정정 등의 내용을 적는다. <신설 2012.8.27.>

④ 중재부는 조정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8.27.>

1. 합의 또는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을 조건으로,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조정 대상보도와 관련된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
2. 피신청인이 이행기일 내에 정정보도문 등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, 늦어진 기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

⑤ 그 밖의 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8.27.>

[본조신설 2011.11.29.]

제3장 중재

제31조(신청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계속 중에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청인으로 언론사등을 피신청인으로 본다. 이 경우 중재신청서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조정신청서로 갈음하며, 조정절차에 제출된 각종 서류 및 당사자들의 주장·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4.6., 2009.6.29., 2011.7.11.>

③ 중재합의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서면(書面)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(書面)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. <신설 2009.4.6., 개정 2011.7.11.>

1.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적혀있는 경우
2. 당사자 간 우편·팩스·이메일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사관은 해당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상대방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. <신설 2009.4.6., 개정 2009.6.29.>

⑤ 제4항에 따른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중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통지를 위원회에 발하여야 한다. 만일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발하지 않으면 중재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09.4.6., 개정 2009.6.29.>

⑥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중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중재신청서는 조정신청서로 본다. <신설 2009.4.6., 개정 2009.6.29., 2011.7.11.>

[제목개정 2009.4.6.]

제31조의2(중재신청권고) 조사관은 중재가 적합하다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[본조신설 2009.2.9.]

제32조(심리) ① 중재부는 중재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중재부에서 구술심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(書面)에 의한 심리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양쪽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[전문개정 2009.4.6.]

제33조(당사자의 불출석) ①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불출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(書面) 또는 그 밖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③ 당사자 양쪽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,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1.>

제34조(중재화해결정)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35조(준용) 그 밖에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7.11.>

제4장 보칙

제36조(보도이행등 사실의 통지) ① 피신청인이 중재부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정정보도문등을 게재, 방송, 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청인 및 담당 중재부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6.29., 2011.7.11., 2011.11.29.>

② 피신청인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 제공 또는 매개 계약을 맺어 조정 대상 보도문을 송고한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1.29.>

③ 피신청인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를 통보받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때에는 그 표시일

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중재부에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6.29., 개정 2011.11.29.>

[제목개정 2009.6.29.]

제37조(기록의 열람등) ①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정본·등본·초본·사본의 교부(이하 '열람등'이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2.11.26.>

1. 당사자 또는 대리인(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열람등을 위임 받은 사람 포함)
2.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신청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여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
3.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

② 조정등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관 입회 하에 조사관 업무시스템 상의 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, 2012.11.26., 2019.2.25.>

③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정본·등본·초본·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조사관 업무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서면(書面) 또는 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교부한다. <개정 2010.12.7., 2011.7.11., 2012.11.26., 2019.2.25.>

1. 정본의 경우 : 정본임이 기재되고 조사관의 기명날인 및 중재부장의 직인이 찍혔는지 여부
2. 등본·초본·사본의 경우 : 등본, 초본 또는 사본임이 기재되고 조사관의 기명날인 및 조사관의 직인이 찍혔는지 여부

④ 조사관 업무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으로 출력된 서면(書面)은 정본으로서 효력이 있다. <신설 2010.12.7., 개정 2011.7.11., 2012.11.26., 2019.2.25.>

⑤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7., 개정 2012.11.26.>

⑥ 제3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0.12.7., 2012.11.26.>

제37조의2(기록 열람등의 신청 방식 및 관리) ①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하려는 사람은 기록 열람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조사관은 이를 조사관 업무시스템에 등재하고, '기록 열람등 신청서철'에 순서대로 편철한다. <개정 2019.2.25.>

[본조신설 2012.11.26.]

제38조(누설금지) 조정등의 기일에 참석한 중재위원, 조사관 및 기타 사무처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과정, 중재위원의 의견 및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정등의 과정이 공개되었거나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9조(위임)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5-1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위원회의 다른 규칙에 규정된 '중재서기'는 '조사관'으로 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5-21호>

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8-8호>

이 규칙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9-2호>

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9-3호>

이 규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9-6호>

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09-10호>

이 규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0-6호>

이 규칙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0-13호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0-20호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<규칙 제2011-3호>

이 규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1-10호>

이 규칙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1-16호>

이 규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2-4호>

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2-10호>

이 규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2-11호>

이 규칙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2-14호>

이 규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5-6호>

이 규칙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5-14호>

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8-12호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019-5호>

이 규칙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5.2.24.>

중재부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

명칭	위치	관할구역
서울제1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서울제6중재부 서울제7중재부 서울제8중재부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일원 및 경기도 일부 지역(가평군, 고양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, 의정부시, 파주시, 포천시)
부산중재부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
대구중재부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
광주중재부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
대전중재부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
경기중재부	경기도 수원시	인천광역시 및 서울중재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
강원중재부	강원도 춘천시	강원도 일원
충북중재부	충청북도 청주시	충청북도 일원
전북중재부	전라북도 전주시	전라북도 일원
경남중재부	경상남도 창원시	경상남도 일원
제주중재부	제주도 제주시	제주도 일원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5.8.31.>

언 론 조 정 신 청 서

청 구 명	(□정정보도 □반론보도 □추후보도 □손해배상) 청구			
신 청 인	성명 또는 단체명		대표자 성명 ※단체인 경우	
	주소 또는 소재지		생년월일 ※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단체고유번호	
	전화번호		E-mail	
피신청인	성명 또는 법인명		대표자 성명 ※법인인 경우	
	주소 ※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연락처	
조정대상	매 체 명			
	보도일자			
	보도면 / 보도시간 ※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(URL)도 함께 기재 요망			
	보도가 있음을 안 날 ※추후보도청구인 경우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사실을 안 날			
조정신청취지	※별지 작성 (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 청구하는 보도문 /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청구액)			
조정신청이유	※별지 작성			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

구비 서류 :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※인쇄매체,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(TV 등)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	수수료 없음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5.8.31.>

언 론 중 재 신 청 서

청 구 명	(□정정보도 □반론보도 □추후보도 □손해배상) 청구			
신 청 인	성명 또는 단체명		대표자 성명 ※단체인 경우	
	주소 또는 소재지		생년월일 ※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단체고유번호	
	전화번호		E-mail	
피신청인	성명 또는 법인명		대표자 성명 ※법인인 경우	
	주소 ※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연락처	
중재대상	매 체 명			
	보도일자			
	보도면 / 보도시간 ※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(URL)도 함께 기재 요망			
	보도가 있음을 안 날 ※추후보도청구인 경우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 사실을 안 날			
중재신청취지	※별지 작성 (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 청구하는 보도문 /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청구액)			
중재신청이유	※별지 작성			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

구비 서류 : 1.당사자간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2.중재대상 표현물의 사본 인쇄매체,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(TV 등)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	수수료 없음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09.6.29.>

이 의 신 청 서

사건번호	
청 구 명	
신 청 인	
피신청인	

위 당사자간 조정신청사건에 관한 귀 중재부의 년 월 일자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.

· 이의신청 사유 :

제1심 관할법원 ※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함	**지방법원**

년 월 일

이의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언론중재위원회 _____ 중재부 귀중